

부산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0가단3223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변 론 종 결 2022. 4. 12.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2019. 4. 16.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124,502,210원과 2019. 2. 16.부터 2019.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502,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주위적으로 위와 같은 청구,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에 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7.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통해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만 유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9차전212호 지급명령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247,502,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4.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다.

나. D은 2019. 4. 18.경 “D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는 5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D이 지정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D이 양도한 채권이 법률상 하자 없이 양도되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C에게 교부하였고, 2019. 4. 16.경 D과 피고 사이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C은 2019. 4.경 “피고는 D로부터 양수받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6억 원을 주식회사 C과 협의하여 일시불로 날인일 즉시 2억 원을 수령하고 전체 채권 6억 원을 채무 변제 완료한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9. 4. 18.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잔액인 124,502,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4,502,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반드시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 당시 존재하는 모든 적극재산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의 가액과 사해행위 당시의 모든 소극재산의 가액을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참조).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연대보증채무인 경우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연대보증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그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이 확보되는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참조).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E은행,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G기관의 신용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당시인 2019. 4. 16. 기준 D은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단위 원).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순번	분류	적극재산	재산가액
1	부 동 산	진주시 H빌딩 5층 I호	322,869,376
2		진주시 H빌딩 6층 J호 (취득일 : 2009. 12. 30., 2019. 6. 11. H빌딩 K호와 합병)	754,827,064
3		진주시 H빌딩 7층 L호	894,303,560
4	금 전 채 권	창원시 성산구 M빌딩 N호(전세보증금)	200,000,000
5		거제시 O	351,037,691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	10,311,722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2 생략)	-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3 생략)	-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4 생략)	659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5 생략)	1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6 생략)	-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7 생략)	-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8 생략)	-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9 생략)	-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0 생략)	510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1 생략)	307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2 생략)	106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3 생략)	30,294,459
E은행 예금채권(계좌번호 14 생략)	-		
	F조합 보통예탁금(계좌번호 15 생략)	44,532	
6	출자 채권	서울시 강남구 P건물 Q공제조합	519,236,680
합계		3,082,926,667	

순번	계좌번호	소극재산		합계	채무 내용
		원금	이자		
1	(계좌번호 16 생략)	10,740,000,000	364,492,605	11,104,492,605	R E은행대출 보증채무-기업운전 중장기일반대출
1-1		7,160,000,000	209,661,736	7,369,661,736	R S대출 보증채무-일반대출
2	(계좌번호 17 생략)	244,840,183	1,541,421	246,381,604	E은행 기업운전할부상환
3	(계좌번호 18 생략)	200,000,000	1,268,273	201,268,273	E은행 기업운전단기일반
4	(계좌번호 19 생략)	2,000,000,000	22,788,416	2,022,788,416	E은행 기업운전단기일반
5	(계좌번호 20 생략)	210,100,000	1,358,416	211,458,416	E은행 기업운전구매자금
6	(계좌번호 21 생략)	180,000,000	728,526	180,728,526	E은행 기업운전구매자금
7	(계좌번호 22 생략)	100,000,000	646,429	100,646,429	E은행 기업운전구매자금
8	(계좌번호 23 생략)	71,950,000	465,106	72,415,106	E은행 기업운전구매자금
9	(계좌번호 24 생략)	105,250,000	548,463	105,798,463	E은행 기업운전구매자금
10	(계좌번호 25 생략)	300,000,000	1,563,318	301,563,318	E은행 기업운전구매자금
11	(계좌번호 26 생략)	81,636,819	834,529	82,471,348	E은행 신용카드
12	(계좌번호 27 생략)	69,117,159	874,853	69,992,012	E은행 신용카드
13	(계좌번호 28 생략)	41,408,185	-	41,408,185	E은행 T대출
14	(계좌번호 29 생략)	32,804,999	-	32,804,999	E은행 T대출
15	(계좌번호 30 생략)	3,000,000,000	32,516,073	3,032,516,073	E은행 기업운전중장기일반 자금대출
16	(계좌번호 31 생략)			276,059,187	E은행
17	(계좌번호 32 생략)			218,700,000	E은행
18	(계좌번호 33 생략)			1,100,000,000	F조합
19				1,200,000,000	신용보증기금 유통화센터
합계				24,537,107,345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은 위 소극재산의 순번 1 내지 15와 관련하여, 2018. 9. 6. 채권자인 E은행과 S에게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09억 2,000만 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채권최고액 109억 2,000만 원 상당은 소극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건물명	호실	소유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전주시 H빌딩	U, V, W, X, Y, Z, AA, AB, AC	AD	E은행 S	D	109억 2,000만 원
	I, J(K는 J에 합병), L	D			
사천시 AE건물	U, V, AF, AG, AH,	AI			
창원시 AJ빌딩	AA, AB, AK, AL	AI			
	AC, AM, AN	AO			
창원시 AP건물	AQ, U, V, AF, AG, AR, AS, AT, AU, AV, AW, AH, AX, AY, AZ, BA, BB, BC	BD			

② D은 2016. 11.경 주식회사 BD(이하 'BD'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창원 성산구 BE 공동주택 건설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위 소극재산 순번 4, 15 기재와 같이 E은행으로부터 원금 기준 합계 50억 원을 대출받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D로 하여금 위 공사의 준공 즉시 그때까지의 미분양물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E은행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제2순위(우선수익권 한도금액 36억 원), 제3순위(우선수익권 한도금액 24억 원)로 지정하였다. E은행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미분양 아파트는 9개 호실이고 분양금액 기준으로 합계 20억 8,800만 원이라는 것이므로 적어도 위 20억 8,800만 원은 소극재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③ 위 소극재산 순번 1은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거제시 BF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된 D의 보증채무이고, 순번 4, 15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D가 시행하는 BE 공동주택 건설 공사와 관련된 D의 채무다.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 과정에서 받은 대출을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면서, 위 사업들과 직결되고 그 금액이 훨씬 큰 D의 공사대금채권을 적극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D은 BD가 시행하는 BE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시공사로 상당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을 것이고, 2017. 9.경 R가 시행하는 거제시 BF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공사로 약 33,555,852,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2018. 7.경 BG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창원시 BH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약 58,586,38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의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소극재산 24,537,107,345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채권 양도액 6억 원은 위와 같은 D의 공사 규모에 비추어 큰

금액이 아니다. D은 2019. 5. 31.부터 B타운하우스 여러 호실 합계 17억 원 상당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④ D의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다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큰 금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⑤ E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508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나57908호)은 2019. 3. 5. 기준으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제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9. 3. 5.로부터 불과 약 한달 뒤인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4. 16. 기준으로 D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